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목적 등)

-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재 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해제)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비급여 대상 항목과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1와 같다.

■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매월 이용료 등의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024년 주야간보호 비급여 항목 및 수가 기준

2024 01. 01 적용

1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66,360	9,954.0	248,850.0	5,972.4	149,310.0	3,981.6	99,540.0	70,000	57,500	25,000	343,850	244,310	194,540
22일기준			218,988.0		131,392.8		87,595.2	61,600	50,600	22,000	302,588	214,993	171,195
21일기준			209,034.0		125,420.4		83,613.6	58,800	48,300	21,000	288,834	205,220	163,414
20일기준			199,080.0		119,448.0		79,632.0	56,000	46,000	20,000	275,080	195,448	155,632
2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61,480	9,222.0	230,550.0	5,533.2	138,330.0	3,688.8	92,220.0	70,000	57,500	25,000	325,550	233,330	187,220
22일기준			202,884.0		121,730.4		81,153.6	61,600	50,600	22,000	286,484	205,330	164,754
21일기준			193,662.0		116,197.2		77,464.8	58,800	48,300	21,000	273,462	195,997	157,265
20일기준			184,440.0		110,664.0		73,776.0	56,000	46,000	20,000	260,440	186,664	149,776
3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56,760	8,514.0	212,850.0	5,108.4	127,710.0	3,405.6	85,140.0	70,000	57,500	25,000	307,850	222,710	180,140
22일기준			187,308.0		112,384.8		74,923.2	61,600	50,600	22,000	270,908	195,985	158,523
21일기준			178,794.0		107,276.4		71,517.6	58,800	48,300	21,000	258,594	187,076	151,318
20일기준			170,280.0		102,168.0		68,112.0	56,000	46,000	20,000	246,280	178,168	144,112
4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55,210	8,281.5	207,037.5	4,968.9	124,222.5	3,312.6	82,815.0	70,000	57,500	25,000	302,038	219,223	177,815
22일기준			182,193.0		109,315.8		72,877.2	61,600	50,600	22,000	265,793	192,916	156,477
21일기준			173,911.5		104,346.9		69,564.6	58,800	48,300	21,000	253,712	184,147	149,365
20일기준			165,630.0		99,378.0		66,252.0	56,000	46,000	20,000	241,630	175,378	142,252
5등급, 인지지원등급													
구분	1일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비급여			합계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일수가	월수가	점심식대 2,800원	저녁식대 2,300	간식비 1,000원	15%	9%	6%
25일기준	53,640	8,046.0	201,150.0	4,827.6	120,690.0	3,218.4	80,460.0	70,000	57,500	25,000	296,150	215,690	175,460
22일기준			177,012.0		106,207.2		70,804.8	61,600	50,600	22,000	260,612	189,807	154,405
21일기준			168,966.0		101,379.6		67,586.4	58,800	48,300	21,000	248,766	181,180	147,386
20일기준			160,920.0		96,552.0		64,368.0	56,000	46,000	20,000	236,920	172,552	140,368